

1. 개정이유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산림복원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에 산림복원 추가(제4조제1항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4. 15.>

교육·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산림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 1)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숲가꾸기·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술분야의 교육·훈련
- 2) 산림공학기술과정: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자연휴양림·숲길 조성 등 산림공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
- 3) 녹지조경기술과정: 수목원, 도시숲등, 자연휴양림 및 숲길 조성 등 녹지조경기술분야의 교육·훈련
- 4) 산림복원기술과정 : 산림복원 기술분야의 교육·훈련
- 5) 산림경영기능과정: 조림·숲가꾸기·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능분야의 교육·훈련

2. 교육·훈련의 이수시기와 시간

구분	이수시기	교육·훈련 시간
신규교육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교육·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 가. 산림기술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나.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한다.
- 다. 산림기술자가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날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미리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비고

- 1. 교육·훈련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교육,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2. 그 밖에 교육·훈련의 이수방법, 교육·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절차 등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